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252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혜지 의원 외 43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09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지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전보다 확장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세부화 및 사전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및 의견수렴, 실태조사 추가함.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

나. 주요골자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 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음(안 제6조1항제1호,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동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민의 안전 확보를 보다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수립과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교통정책과-36108호(2022.12.15.)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수정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추진 방법을 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사업시행 시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추진 시 이용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체화 관련(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²⁾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안전이용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의 불법주차 억제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거나 사업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시행 주체로 검토·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설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및 거치대³⁾를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부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주차시설 이용료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과 공용보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보행자전거과-4008(2022.11.10.)호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 시행 계획”

- 설치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주차거치대)
- 주차구역 : 시범사업 30개소(‘22.7.~9), 본 사업 164개소(‘22.11.~12)
- 소요예산 : 260백만원

		
<p><노면표시(안)></p>	<p><교통안전표지></p>	<p><주차 거치대(안)></p>

■ 시범사업 추진방법 및 의견수렴 관련(안 제6조제1항제1,2호)

-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해 동 개정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범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토록 규정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 관련 업체와 자치구 등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업 신청 및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주차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보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단계에서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반영하는 것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실태조사 시행과 시민의견 수렴 관련(안 제8조제2항)

-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이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안전이용환경 조성 사업 및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동 조례 제5

조4) 및 제6조5)의 사업추진 시 구청, 관계자 및 이용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필요시 사업별 목적과 시기를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시행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실있는 조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주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u>위한</u>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③ (생략)</p> <p>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사업추진 등) ①----- ----- ----- <u>위해 다음 각 호의</u> -----.</p> <p><u>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 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u></p> <p><u>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u></p> <p><u>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u></p> <p><u>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 ----- ----- ----- ----- -----.</p>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8조(실태조사) (생 략)

<신 설>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등을 통해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